

의안번호	2126239
의 퇴 인	강민정 의원
회 답 일	2024.01.30.
추계번호	24C0016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단계 학령기(學齡期) 아동”이란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보호 등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11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례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나.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 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자주적·협력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온종일 돌봄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의무규정
2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온종일 돌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온종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형평성 있는 돌봄이 제공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동과 보호자가 돌봄 지원요청을 할 때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온종일 돌봄시설의 확대를 위한 시책 및 민간운영 온종일 돌봄시설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안 제5조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의 조정 2.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 3. 온종일 돌봄시설 최소 운영기준 수립 4.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부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된다.	의무규정
		(제4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6항) 그 밖에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6조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5년마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온종일 돌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온종일 돌봄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5.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 6.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제4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	의무규정

		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항)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안 제7조 (시행계획 등의 수립 등)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의 수요·공급의 변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변경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8조 (광역돌봄협의회)	(제1항) 시·도지사는 온종일 돌봄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광역돌봄협의회(이하 “광역돌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시·도지사를 광역돌봄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온종일 돌봄 관련 전문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 등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제3항) 광역돌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7	안 제9조 (기초돌봄협의회)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온종일 돌봄시설 간 협력 증진, 온종일 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의 조사 등을 위하여 기초돌봄협의회(이하 “기초돌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을 기초돌봄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온종일 돌봄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 내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제3항) 기초돌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0조 (온종일 돌봄)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보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안전한 보호 2. 간식 및 급식 지원 3.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의무규정

		4. 체험 및 놀이활동 지원 5.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6.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보호	
9	안 제11조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 등)	(제1항)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치·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시설을 인수하거나 제2조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온종일 돌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온종일 돌봄 업무를 위탁한 때에도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의 온종일 돌봄 시설의 경우 추후 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위탁 시설이 같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에 따라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학교 또는 시·도 교육감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항)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 운영 방법, 인력 운영, 온종일 돌봄시설의 인수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12조 (온종일 돌봄시설 최소 운영기준의 설정)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립하는 온종일 돌봄시설 최소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기준: 아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면적 확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설비기준: 아동에 대한 안전한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냉난방 설치기준: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활동공간 기준: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동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11	안 제14조 (온종일 돌봄 지원 센터의 설치 등)	(제1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시설 및 온종일 돌봄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2. 온종일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협력 지원 3. 온종일 돌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4.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의 제공, 홍보 및 교육 5.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온종일 돌봄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7.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광역돌봄협의회 및 기초돌봄협의회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분석 지원 8.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항) 그 밖에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2	안 제15조 (실태조사 등)	(제1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17조 (보호자의비용 부담)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4	안 제18조 (온종일 돌봄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안 제19조 (재정정보화)	(제1항)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의무규정
16	안 제20조 (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7	안 제21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¹⁾²⁾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따른 광역돌봄협의회와 기초돌봄협의회의 경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돌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2022년 12월 기준 광역 82%, 기초 73% 기구성됨) 추가재정 소요는 기존 경비 내에서 충당가능한 것으로 봄. 다만, 제정안의 시행으로 기존 돌봄협의회의와 별개의 조직이 신설되거나, 기존 돌봄협의회의의 안건·위원수 등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기존경비내에서 충당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 2) 안 제15조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최근 3년간 ‘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위탁용역’(계약금액 45,700천원), ‘2022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위탁용역’(계약금액 49,500천원),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³⁾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부처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⁴⁾ ‘늘봄학교’(교육부) 300,535명, ‘학교돌봄터’(보건복지부) 1,521명,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23,377명,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109,566명이 돌봄서비스를 이용중임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⁵⁾

-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이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수당 등에 대한 추가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임

— 2024년 현재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고용부, 문체부, 저출산위원회), 안전별로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등의 국장급 등 인원으로 구성된 ‘초등 돌봄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 다만, 동조 제4항의 사무국이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소관 팀 등 보다 확대된 규모로 조직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규모 및 소요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안 제6조에 따른 ‘온종일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은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구체적 예산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움

— 교육부는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2023년 「융합으로서 교육·돌봄 국가책임모델 개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연구’(계약금액 45,454천원),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위탁용역’(계약금액 29,954천원)을 실시한바 있으며 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수행되던 실태조사와 유사한 규모로 실시된다고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 제안이유 참조

4) 교육부(늘봄학교) 2023.4.30.기준, 보건복지부 2023.11.(학교돌봄터), 2023.9.(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2023.12.31.기준 자료

5) 안 제2조 및 안 제3조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수립·시행 및 예산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 또는 이 법에 따라 구체화될 온종일 돌봄 관련 정의 규정으로 구체적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발 연구」 용역(계약금액 5,000만원)을 수행한바 있으나, 동 제정안의 경우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온종일 돌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등에 대한 각종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교육부 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을 포괄하며, 이를 근거로 안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⁶⁾이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시 위 용역의 계약금액과 상이한 규모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 안 제14조에 따른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와 ‘온종일 돌봄 지역센터’의 경우 설치·운영·위탁 등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규모·조직 및 관련 예산에 대한 예상이 어려움
 - － 2024년 현재 교육부는 교육부 내 조직인 ‘방과후돌봄정책과’와 ‘늘봄지원센터(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⁷⁾’과 ‘ 시도지원단⁸⁾’을 운영 중이며, 여성가족부의 경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탁)’과 ‘지자체 직영 또는 청소년 단체’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임
 -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에 대한 조정 등 돌봄지원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을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실점에서 구체적인 조직형태 및 소요재원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에 따라 ‘최소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및 ‘온종일 돌봄시설의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기준 및 추가·감축될 시설, 시스템 구축방식, 예산지원 규모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움

[표 1] 부처별 돌봄 서비스 현황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시행시기	2004	2021	2018	2004	2005

6) 안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은 종합계획 등에 따라 수립되며, 종합계획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수립가능한 것으로 가정함

7)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을 보조

8)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시·도에서 위탁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근거법률		특별법 제정추진 중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지원대상		초 1~6학년	6~12세 미만	6~12세 미만	18세 미만	초 4~중 3
지원기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생	맞벌이 가정 중심	맞벌이 가정 중심	우선돌봄아동 ⁹⁾ 중심	돌봄취약계층 우선지원
지원형태		무상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이용료 자부담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 간식비: 실비 별도)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무상
운영 시간	학기	방과 후 ~17시 (일부 아침 7~9, 저녁 17~20시 운영)	14시~20시 포함 8시간 이상 운영	14시~20시 포함 8시간 이상 운영	14시~20시 포함 8시간 이상 운영	방과 후~21시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9시~18시	9시~18시	12시~17시 포함 8시간 이상 운영	
지원내용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급식 및 상담 등
운영현황		15,147실 300,535명 (‘23.4월 말 기준)	81실 선정 (70실 운영), 정원 1,536명 (‘23.11월말 기준)	981개소, 정원 24,809명 (‘23.9월말 기준)	4,256개소 정원121,184명 (‘23.9월말 기준)	350개소 정원 13,355명 (‘23.12월말 기준)
			직 32실, 영 정원 800명	직 48개소, 영 정원 1,224명	공 108개소, 립 정원 3,574명	직 56개소 영 정원 2,090명
			위 38실, 탁 정원 736명	위 933개소, 탁 정원 23,585명	민 4,148개소, 간 정원117,610명	위 294개소 탁 정원 11,265명
	학교 설치 여부	단위학교 설치·운영	학교에 설치된 돌봄시설 :81실,정원1,536명	학교에 설치된 돌봄시설 : 해당없음	학교에 설치된 돌봄시설 : 해당없음	학교에 설치된 돌봄시설 :5개소, 180명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시설 중 직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전환 노력을 하여야 하고, 모든 위탁 시설이 같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는 등 돌봄서비스 전체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에 따라 수립될 ‘최소 운영기준’ 및 이에 미달하는 시설 수와 재정지원규모, 현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또는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시설의 직영 전환 또는 축소 계획, 보호자에 대한 비용분담 정도, 국·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움

9) 기초수급·차상위·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구·다자녀 아동

-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의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및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시스템을 연계·개편하여 활용할 것인지 또는 전면적 재구축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예산이 어려워 소요재원 예측에 한계가 있음¹⁰⁾

- 이에 개정안에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10) 2024년 현재 정부24의 ‘온종일 돌봄 시설 서비스’ 카테고리를 통하여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이용 및 신청이 가능하나, 제정안에 따른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기능할지에 대한 예산이 어려움

